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언어치료, 심리치료, 수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수립된 경우
- 장애인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어려운 경우

제40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통합적 재활계획수립회의 및 사례회의 실시
- 회의록에 따른 결정사항의 장애인 동의
- 기관장 결재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 수립

아.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신체자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더구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언론매체를 보면 일부 시설에서 발생되는 시설생활자에 대한 감금과 폭행, 학대 등이 소개되어지고, 그때마다 시설은 인권유린의 근거지인양 매도되기도 하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곤 한다.

물론 극히 일부분의 시설들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분야의 한 사람으로써 이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신체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재차 명문화하여 포함시켰으며, 기관과 직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화하였다. 특히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장애인복지가 전문적 실천방법이 아닌,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입장에 있을 때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전문가적 실천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 규정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특성이나 질병에 따라 의료기관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절차에 의해 일정부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침해 사례

내담자는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의 엄마로 지난 2002년 주간보호시설의 원장에 의해 아이가 구타당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일어서면서 옆에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손에 잡아 일어섰다는 이유였다. 원장은 때린 게 아니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 번 두들겼다고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육차원에서 때렸다고만 한다. 담당교사가 본 것은 아이가 고의로, 싸움으로 머리를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엄마는 전치 2주의 진단서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원장은 막무가내었다고 한다.

관련 예규

제4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장애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 장애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기타 장애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애인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장애인을 방치·유기하는 경우
 -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 기타 장애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제43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 장애인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4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자선적 시혜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 모색 및 연구
- 장애인에 대한 사적감정 배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5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4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신체자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해 일정기간 신체적인 제약을 실시하는 경우
2. 전문가의 개입과정에 따른 재활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진행되는 경우

제46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신체자유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재활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장애인의 동의 및 사실전달
3. 해당 장애인을 위해 2인 이상의 담당자를 임시 선정하고 그중 한명은 감독자의 직위를 선정
4.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원상회복
5. 기간중 수시로 제약 이외의 사항이 침해되지는 확인

4.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라 함은 성인기에 도달한 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내 서비스의 기본체계를 갖춤으로써 온전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또한 비장애인과 상호작용하고, 주류 사회에 더욱 통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 장애인들은 만성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일반 노동자보다 열배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 월 평균 실업률이 2.4%인데 반해, 장애인 실업률은 27.3%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적이 전체의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 규정에서는 장애인 역시 다른 사람들만큼 보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나 기관, 직원은 그들이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

을 다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일로부터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것은 능력보다는 사회적 환경과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공개 고용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경쟁적인 성격과 취업 가능한 직업들의 감소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한번도 가지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시설이나 직원들이 일로부터 장애인이 배제되는 것에 낙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들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맞서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균형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침해 사례

서울시 강동구 용납동의 모자를 만드는 가내수공업 공장에서 10여년동안 봉제일을 해온 정신지체인 강00(30)씨는 고용주의 젖은 구타를 견디지 못해 지난 해 8월 공장을 도망쳐 나왔다.

강씨에 따르면 자신을 고용한 김00씨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시켰지만 임금은 주지 않아 용돈으로 몇 천원씩만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가 3년 전부터 임금대신 강씨 명의로 3년 만기 5백만원짜리 적금을 매월 10만원씩 봇고 있다가 지난해 8월 젖은 구타로 강씨가 그곳을 나가자 적금만기일인 지난 해 12월 적금을 찾고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능이 77로 경도정신지체인 강씨는 현재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거택보호자로만 등록되어 현 주거지인 고덕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강씨를 고용했던 김씨측은 "00이는 고향사람의 아들로 일은 하지 않고 말썽만 피워 마음잡고 일하라는 뜻에서 적금을 부어주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지능이 떨어져 돈을 쓸 줄도 모르는 아이에게 돈을 줄 수는 없고 00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는대로 아버지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씨는 "내가 지능이 모자라는 장애인이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김씨측에서는 구타를 하면서 나가라는 말을 자주 했다"며 "지병인 축농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도 김씨측은 잠이 안오면 일이나 더하라며 약값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보호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서울지부 후원회는 "강씨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구타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말하며, "10여년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은 주지 않고 구타를 일삼은 것은 엄연한 인권유린이며, 강씨가 30세가 넘은 성인인데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고 돈을 연락도 되지 않는 아버지에게 돌려주겠다는 김씨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1997.4. 장애인복지신문)

관련 예규

제48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업선택의 자유)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직업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장애인은 직업능력평가 및 상담을 통해 본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② (직업전준비훈련의 참여 보장)

1.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직업전준비훈련이라 함은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활동훈련 등 직업생활에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훈련을 말하며, 이러한 훈련을 지원받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없다.
3. 장애인은 직업교육을 위한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직업생활 유지)

1. 장애인은 직업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불편없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은 취업업체와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 있어 스스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을 대변자로 선임·지원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의 급여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급여액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49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에 필요한 업체상담 및 권리보호를 위해 기관에서는 직업훈련교사 및 상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교육 및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기관의 방향성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소득액은 전액 장애인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0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담당직원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담인·대변인·중재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선택·훈련·유지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급여 관리와 관련되어 담당직원은 객관적이고 증빙가능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나. 교육 및 학습 보장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권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의 교육·학습 받을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보장하여야 함을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주류사회의 교육으로부터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배울 능력이 없거나 특수시설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과 사회 경험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학교생활(교육)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성인기에 도달한 후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과 직원은 최대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 장애유형, 정도, 능력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접근을 위한 수단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화하였다.

최근 주류 사회의 일반학교 속으로 장애인을 통합 교육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을 주류화라고 한다. 그러나 주류화의 철학은 모든 장애아동이 주류 사회의 일반학교에 가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장애아동은 항상 특수교육이나 주거시설 형태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많은 장애아동들의 경우, 만약 필요한 자원들과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원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급적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 침해 사례

내담자는 정신지체 25세 남성의 형으로써, 그는 자신의 동생이 일반 학교를 졸업한 후, 특별한 교육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그리고 그 밖의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알고 싶어 한다. 내담자의 동생은 지능이 50정도이며,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한다. 또한 직업재활학교보다는 정신지체인 특수학교를 알아보고 입학을 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동생이 그동안 사회재활훈련 및 적응을 위한 아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관련 예규

제52조(권리보장의 영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학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은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교육기회도 부여되어야 한다.
- ② 장애인은 동일 연령대의 또래집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은 본인의 능력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식의 지원받을 수 있다.
- ④ 장애인은 교육기관의 접근을 위한 각종 수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3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연령별·학력별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2. 장애인의 교육·학습에 대한 욕구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합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4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능력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2. 장애인의 교육적 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 개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합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5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5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교육·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도저히 교육·학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6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교육·학습권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재활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장애인 및 연고자에 대한 사실 전달과 동의
3. 해당 장애인의 최소한의 신변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계획 수립·지원
4. 매년 1회 이상 교육 진행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실시
5. 제55조에 의한 침해사유의 종료시 즉시 원상회복

다.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적서비스를 명확하게 수급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설보호의 가장 큰 핵심은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책임감은 시설장애인을 구빈적 대상이 아닌 소비자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적·정신적 제한이 있는 소비자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공적 서비스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관과 직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장애인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과 직원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가능하다면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도우미를 지원받아 본인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다.

□ 침해 사례

000은 10세의 정신지체 남자아동의 어머니였다. 000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동전화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전화의 요금청구서를 보니까 장애인복지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요금청구서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000은 이동전화를 구입한 대리점으로 가서 이 상황을 따지게 되었는데, 대리점은 손해를 보상해주고 장애인복지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상담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000은 장애인 명의의 핸드폰이 몇 개 밖에 없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는 것 이 어렵고, 대리점의 일처리 과정에서의 속도가 느린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 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000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객센터 서비스의 체계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관련 예규

제58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적 수급비용의 보장)

-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의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으로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은 본인에게 지원되는 공적 수급비용에 대하여 본인의 재활·치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생활시설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인으로써 보장되는 공적 서비스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즉 이동비용·의료비용·양육비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장구 사용의 보장)

-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를 지원받아야 한다.
- 장애인은 보장구의 활용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장애인은 보장구 사용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우미 지원 보장)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도우미는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유급활동가 등을 모두 포함하며, 활용에 따른 비용은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9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 장애인에 지원되는 공적수급비용의 철저한 관리 및 집행
 -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최대한의 비용 지급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0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방법 및 지도안 작성 공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라. 선거 및 참정 보장

장애인의 선거 및 참정 보장이라 함은 생활시설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선거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을 말하며, 시설에서는 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서너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과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접근이 막혀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경우 후보자 선택에 있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정신지체인 부모들은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참정권의 실현은 선거권이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누리는 참정권을 장애인들에게는 공평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권 보장은 사회완전참여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과 직원들은 장애인 스스로 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연히 지원하여야 하며,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화하였다.

▣ 침해 사례

전국투표소중 17%가 지하나 2층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유권자(127만 명)의 불편으로 기권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전국 13,780개 투표소중 지하가 364개, 2층 1,897개, 3층이 88개로 전체의 17%가 투표하기 불편한 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조사에서 응답자의 49.6%가 투표소 위치를 장애물로 응답하고 있으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기표소도 문제라고 한다. (2000.4. 한국일보)

관련 예규

제6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선거정보 접근 보장)

1. 장애인은 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이 보장된다.
2. 장애인은 정보접근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용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의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

② (투표권 행사 보장)

1. 장애인은 선거법에 따른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일지라도 본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특정인을 지정 받아서는 안된다.

제63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선거법 및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따른 공정한 선거 진행
 2. 선거 및 참정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의 보급 등 조치
 3.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선거 교육 실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4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능력에 따른 올바른 선거 교육 실시
 2. 선거와 관련된 중립성 확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합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마.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에 있어 정보이용이라 함은 장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접근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거주이주권 등 시공을 초월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가 주어진 명시된 법이 있으나, 우리 사회 환경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지어진 집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접근권은 장애인이 독립생활의 가능성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보는 숨쉬는 것과 같을 만큼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정보없이 살아가라면 차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운행하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의 경우,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더 정보에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는 정보접근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있어서라도 정보이용과 접근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자유로운 정보매체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다.

▣ 침해 사례

지난 10월 10일 서울 구산중학교 특수반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계전 양(지체와 정신지체 중복장애)이 계단 끝에 걸려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단에 난간이라도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불상사였다. 학교측은 사고가 나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솔직히 말해서 2천명이 다니는 큰 학교에 장애아 13명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 학교와 같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계단의 난간을 갖추는 것이 어떻게 장애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인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그런 시설 아래서는 임계전 양의 경우와 같은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마땅히 솔선수범해서 고치는 게 학교의 마땅한 의무이다. 더군다나 장애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시설이나 사고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비정한 일이다. (1995.11. 월간 함께걸음)

관련 예규

제66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보이용의 보장)

1. 장애인은 어떠한 제한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기관 내에 설치된 컴퓨터, 전화 등 정보매체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동·접근의 보장)

1. 장애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편의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은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7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이동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운영
2. 장애인의 이동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수단 확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8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정보 및 복지시책, 서비스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공개 열람
2. 장애인의 이동접근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으로써의 제 역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비.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보장

장애인의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과 장애인 간에, 시설장애인과 직원 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생활이 지속화되는 것을 말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무연고 장애인들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시설생활장애인에게 있어 직원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수직적 관계 형성'외에는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화할 수 있는 매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 따른 사회적 소외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장애인들에게는 삶에 대한 상실감과 상대적 열등감, 사회 심리적 불안감의 요소로 작용하여 많은 내향성, 의기소침, 당혹, 권위 있는 자에 대한 과잉 의존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더욱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자신의 욕구와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며,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외모상의 약점을 가진 장애인들은 더욱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집단구성원, 집단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점을 두며, 이러한 대상체계간의 상호작용은 서로의 생활과 성장발전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필요한 때 힘을 다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내용을 규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침해 사례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은 우리 사회로부터 그들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신체기능이나 사회적 적응력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장애인을 적장과 학교, 심지어 가정으로부터 속아내 다른 먼 곳으로 내몰고 있다.

선천성 뇌성마비인 K(33, 여)씨는 6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나 30여년간 가족들에게 모친 설움을 받았다. K씨는 특수학교는커녕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한채 집안에 내버려졌다. 막노동과 파출부 일을 하는 K씨의 부모는 "너 때문에 집안에 재수가 없다"고 욕설을 퍼부었고, 형제들도 대화조차 피하며 그녀를 잊고 지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또다른 청각장애인 K(28)군은 "4년간 사제나 친구지간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주변인으로 맹돌았다"며 "따돌림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가 저주스럽다"고 말했다. 맹인안내견에 의지하고 있는 K(23)군은 "식당과 극장, 백화점 등 가는 곳마다 쫓겨나기 일쑤"라며 "동년배들 틈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게 장애인을 돋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인권지침서 중에서)

관련 예규

제70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관계)

1. 장애인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대우와 역할을 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과 장애인 간의 관계)

1. 직원과 장애인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솔직함, 성실, 진심 등에 의해 특징지워져야 한다.

2. 장애인과 직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별도의 식사나 식사 공간, 특정한 용어의 사용, 유니폼 착용 등과 같이 상대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관계)

1.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관계에 있어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관계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상호 존중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와 밖에서 자유로이 외부인과 만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4. 외부방문자는 자유로이 입소 장애인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공간 및 비용지원)

1. 장애인은 개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더라도 외부사람의 방문시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장애인이 대인관계 유지 및 지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장애인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경우 본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초청을 원할 때에도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71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원, 대중들과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이 되도록 최대한의 방향 설정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각종 보장구 지원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개방화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이 또래의 비장애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생활 증진을 위한 제비용을 가급적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72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장애인들이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장애인들 간의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5. 인권침해 사전예방 체계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가진 자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도, 인지능력과 의사결정력이 약하여 그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기 쉽고 일단 침해된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다시금 회복시키기도 어렵다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스스로 누리기 힘든 장애인에게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에 그 기본정신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신은 이미 침해된 인권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아직 침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으로 ① 교육강화, 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③ 연구모임 운영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기관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인권상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화하였으며, 조사표는 본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장애인의 개인적·사회적 권리의 세부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 영역을 나열하여 작성하였다.

관련 예규

제73조(인권상황조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권 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교육강화)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본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75조(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행복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펼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본원 홈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글을 상주시키거나 홈페이지 내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을 따로 마련하여 인식개선의 장으로 삼는다.
2. 본원의 부지 입구, 각 기관의 출입구, 식당, 회의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띠는 장소를 물색하여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한다.
3. 책상용 또는 차량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부착한다.
4. 후원자(단체)의 교육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을 위한 인권 자료 준비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76조(연구모임 운영)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을 유도·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직 설립을 유도·지원한다.
2. 다른 기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3.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발표회를 개최한다.
4. 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식을 공유한다.

6.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즉시 복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동 규정에서는 ①사실의 인지, ②사실조사, ③위원회의 결정·조치, ④소속 기관의 징계 조치 등 사안의 내용과 처리단계에 따라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인권침해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나 위원회의 심의, 기관의 징계 등에 있어 과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기관과 전 직원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벌백계로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

관련 예규

제77조(사실의 인지)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 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사실조사) ① 제73조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 및 제77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별지 1호」의 "장애인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보고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위원회의 결정·조치)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원 내와 본원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본원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본원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80조(소속기관의 징계조치) 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에서는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IV. 끝마치며...

"내 권리도 못 챙기는데 남의 권리는 무슨……"

"나는 규칙이란 걸 아주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니까 인권 문제랑은 별 상관이 없어"

혹시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모여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우리들 마음 역시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하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된 책을 보며,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시설서비스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평소 전혀 인권에 관심없던 사람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것이고, 또한 자기 권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쪽에서 "당신에겐 이런 권리가 있소"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의 잣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권리자가 자기 권력을 아주 손쉽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권에 대한 지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 또한 시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배우기 어려운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에서만이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찾고 싶고 인권을 존중하고 싶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어우러져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과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그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원에서 제정한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이 아직은 시설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규정 작성에 있어 부족한 부분도 많으며 생략되거나 누락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정토론자 및 참가자들의 논의를 통해 계속적인 보완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정토론

■ 지정토론 1

발표: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타 팀장)

■ 지정토론 2

발표: 이지형 (가온들찬빛 사회복지사)

■ 지정토론 3

발표: 임효경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팀장)

시설생활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토론자 : 박 숙 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1. 들어가며

생활시설이 인권침해의 온상, 인권의 사각지대, 창살 없는 감옥 등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간히 터져 나오는 시설의 인권문제는 감금, 폭행, 강제약물투입, 종교 강요, 외부와의 소통 단절, 강제노동, 재산 갈취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상하게도 문제의 양상들이 마치 찍어놓은 듯 비슷하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생활시설에서의 인권문제에 더 이상 충격을 받지도 않는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듯 심각한 불법상황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부 신고시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일축한다. 그러나 실은 신고시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7년 동안을 끌어오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예바다. 거의 인간 사육장이나 다름없던 수심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람재단이 단적인 예다.

문제는 비록 일부시설에서의 일이라고 해도 시설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생활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질 수 있는 시설정책과 시설구조에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생활시설은 이미 가족과 생활할 권리 또는 가족을 꾸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듯 소위 정상(?)적인 삶에서 내몰린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으며 사는 곳이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조사권한을 가진 "다수인보호시설"에 사회복지시설(비록 신고시설에 그

쳐 아쉽긴 하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시설이 다 인권의 사각지대는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며 시설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사회인식의 저하, 이에 따라 후원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시설들이 곁으로 인권 침해시비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뒤로는 복지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남소망의집은 그동안 보다 자유롭고 일상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립이 가능한 생활자들을 그룹홈을 만들어 내보내는 일을 해왔다. 그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서 그동안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져 왔던 생활시설 문제가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시설생활자를 위한 인권내규를 만들었다. 무지 반가운 일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구체적인 시설생활자 인권메뉴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개인간의 일로 치부되어졌던 시설안에서의 생활자인권문제의 책임이 구조와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규정화를 위해 애쓴 분들과 발제를 맡은 윤덕찬 실장과 염형국 변호사에게 감사드리며 지지를 보낸다.

2. 본 론

1)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주제발제문에서 발제자는 인권에 대한 개념정리와 장애인의 법률상의 권리, 한국 장애인인권현장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시설보호의 불가피성과 시설내 인권문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가족과 살 수 없는 장애인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가?

이중 시설보호의 불가피성에 대해 “재가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룹홈과

같은 지역사회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시설보호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결과 장애인은 특성상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인용을 통해 시설에 수용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적어도 4만 5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수용가능 인원은 약 2만 4천 명 정도라는 사실을 들어 신규시설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통계수치의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칫 수용시설 정책의 불가피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연금 도입 및 이동보장 등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IL운동이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생활운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로 또기금 중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던 기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조건부 신고시설 신개축사업비로 전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초연금과 자립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더 이상 신규시설을 짓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발제자의 주장대로 신규시설 설치조건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인권보호와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정책결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시설환경이 좋은 상황이지만(시설장애인 1인을 켜어하는데 연간 4천만원이상이 든다고 함) 시설을 반대하는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생활시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발제자가 문제로 지적한 생활시설의 문제점 중 특히 “입·퇴소상의 문제점”은 시설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일단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입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은 입·퇴소운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 등 시·군·구의 형식적인 관리에 의해 사실상 조장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 시설운영의 폐쇄성, 비민주성, 인권보장의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 장애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다른일 뿐이다!

발제자는 정상화이론과 사회통합이론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 상황에서 시설

인권보장방안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아직까지 시설생활자를 일탈자로 보면서 열등처우원칙에 의해 시설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 정상화 이론은 시설생활자도 일상적인 권리의 주체임을 대사회적으로 납득시키며 시설보호수준을 다소 높일 수 있으나 역으로 장애를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서가 아닌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발제자가 인용한 짐아이프 교수의 지적대로 “시설의 장애인을 객체로 인식하여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인을 정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있다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일방적으로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반인권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상화 이론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했으나 “교남장애인인권보장”시안 내용은 전반적으로 정상화 이론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장애를 비정상의 상태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특성의 하나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노력이 절실히다. 인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정상화 이론 등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소규모화, 지역화·개방화, 인권보장은 추구해야 할 가치!

발제자는 인권의 관점에 따른 시설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소규모화, 지역화·개방화, 인권보장,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화를 위해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방식을 현재의 인원비례지원방식에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일정 인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도입, 시설개방화를 위해 관련된 제주체들이 시설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생활자 중심의 시설운영을 통한 인권보장과 이를 위해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호협의와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높이고 보수교육 실시와 직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설에서의 생활자 인권침해와 함께 시설내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시설이 공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자와 종사자가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 시설주의 눈높이에서 생활자의 눈높이로

시설의 수용가능인원을 현행 300명에서 대폭 축소하고 신고기준을 강화하여 지역과 멀리 떨어진 외곽에 신규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규모화’를 이루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익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비싼 땅을 들여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홈 입주대상을 정신지체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또한 바우처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생활자들이 시설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서비스를 구입하는 주체적인 구매자로서 역할 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자중심의 시설체계가 이용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 후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정하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무엇보다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가 중요한 평가척도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가칭)시설생활자 인권법”제정은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필요가 높다.

시설에 대한 별다른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화, 지역화·개방화, 인권보장의 세가지 원칙은 앞으로 우리의 시설정책이 반드시 채택해야 할 중요한 3대 원칙이란 생각이 든다.

2)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시안과 관련하여

(1) 총칙부분과 관련하여

○ 책임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1조(목적)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책임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시설장을 책임주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규정의 적용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장애인'에서 '생활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본 규정의 대상은 교남에 입소한 시설 생활자이다. 제1조에서 "장애인에게 있어 생활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규정의 적용대상이 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생활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장애인'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범주 안에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등 다양한 능력과 상황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생활자(인)'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⁴⁾

○ '특정권리'의 개념이 모호하며 분리적인 느낌을 준다.

제1조에서 동 규정의 목적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제2조제3호에서 "특정권리"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고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리" 또는 "기본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정권리란 웬지 장애인이 보편적인 기본권보장을 받기 위한 국가 또는 사회의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개념도 매우 모호하다.

○ 용어의 정의에서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

제2조(용어의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 또는 사회적인 정상생활에 필요한 일"과 관련하여 '장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다양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차이로 인해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일상생활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정상적 생활이란 용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일탈자로 낙인화하는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시설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로서가 아닌 '개인의

4) 일본의 하찌오지 평화의 집 직원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에서는 '입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성'과 '환경요인'에 의해 다른 형태의 주거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인권보장위원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구성해야

동 규정 제5조에서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여 구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인권보장위원회는 동 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생활자 인권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보장위원회가 교남의 내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보장위원회는 지역내 인권단체, 관련 전문가, 생활자 대표 등을 고루 포함하여 시설 외부의 제 세력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보장위원회를 시설장 직속으로 두는데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동 규정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유형에 대해 크게 개인적 권리영역과 사회적 권리영역으로 나누고 각각 1.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2 개인물품 관리 보장, 3 주거생활의 보장, 4 종교생활의 보장, 5 성생활의 보장, 6 식생활의 보장, 7 프로그램의 참여 등, 8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등으로 분류하였고, 사회적 권리는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2 교육 및 학습 보장, 3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4 선거 및 참정보장, 5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6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부분은 규정 시행이후 실제 드러나는 사례를 통해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듈다. 다만 시설생활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의료적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의료서비스는 식생활과 함께 시설에서 간간히 드러나는 인권문제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3) 개인적 권리보장 영역과 관련하여

○ 성생활의 보장시 직원과 생활자 관계를 상호존중의 관계로 규정해야

성생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권리임에 비해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에 의해 부인되기 쉬운 권리이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은 그동안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생활의 보장을 따로 규정한 대 대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28조(성과 관련한 직원의 역할)에서 일방적으로 지도하고 받아들이는 위계적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되기에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 제29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에서 2. 낙태 또는 불임시술과 같이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보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와 불임시술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더욱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다. 제한범위의 절차를 살펴보면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시설직원, 전문가, 가족 등의 의견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되고, 최종결정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과 가족 등의 의견이 다를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신체자유권리 제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침해 최소화

반말, 무시 유기 등 폭력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의의가 크다. 다만 제46조(신체자유권리제한 범위의 절차) 5호에서 신체자유권리를 제한할 경우 "수시로" 제약이외의 사항이 침해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00분마다 확인해야 한다"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의무를 규정하여 최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적 권리보장 영역과 관련하여

○ 직업생활

제48조에서 2"직업생활을 통한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가 심각한 상황에서 매우 의미있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급여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5)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 인권교육 실시 방법 구체적 명시 필요

제74조에서 직원, 생활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이나 실시방법, 실시회수, 시간 등 보다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6)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 사실조사요원은 외부인 1인 이상 참여 보장

제78조(사실조사)에서 사실조사요원을 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록 관련부서 직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내부 직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조사요원의 50%이상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가 가능한 외부인으로 인권감수성을 갖춘 인권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맷 으 며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 12. 20 유엔총회) 제4조에서는 "정신지체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UN 제 30차 총회에서 채택) 제11조에서도 "만일 장애인이 전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동년배의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헌장(1998. 12. 9. 국무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여 제정 선포) 8조에서도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이라는 것이 아직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단위란 점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또는 가족을 이를 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헤어지거나 아예 가족을 이를 수조차 없어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기본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이다.

시설의 존립근거 바탕에 이미 장애로 인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또는 가족을 이를 권리 침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게다가 시설은 취약한 다수의 사람이 폐쇄적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시설입소는 가장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며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신고시설이 생활자의 인권에 무감각한 상황에서 교남소망의집의 이번 활동이 우리사회 시설생활자의 인권확보를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시설생활자를 목욕봉사의 대상으로 내몰고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벼젓이 목욕봉사 사진을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태, 가족들 앞에서 막 입소한 생활자의 옷에 굵은 매직으로 이름을 벽벽 써대는 일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았으면 좋겠다.

♥ 토론 2♥

“사회복지시설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적 관점이 필요”

토론자 : 이지형 (가온들찬빛 인권·행복위원회 위원장)

우리 사회는 인간답게 살아 갈 권리이자 기본권에 속하는 행복추구권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차별과 편견에 의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졌던 장애인들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해 왔던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와 자신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권리보다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정립되고 있다.

또한 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으며, 정치적 압력과 정책적 제도적 입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 사회변화는 소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인권으로의 관심 가짐에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장애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장애인복지시설들은 장애인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 혹은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즉 원장 1인 중심의 시설운영이라는 그 동안의 운영 형태와, 정부의 떠넘기기식 복지지원미비와,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으로, 시설은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아직도 이러한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패러다임이 자선적이며, 자선적이고 시혜적 대상인 시설 장애인들은 당연히 자선적이고 시혜적으로 보여야 정부와 민간 지

원이 많이 주어진다는 일부 운영자의 그릇된 복지 철학과 운영방법에 의한 결과라 여겨진다.

이제 우리 복지인들은 과거의 어두운 아픔을 걷어내고 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에 좀 더 책임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한다.

오늘 시설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남소망의집을 비롯하여 3곳의 장애인시설(익산 동그라미재활원, 부산 가온들찬빛, 광주 소화천사의집)은 2년 전부터 시설의 운영방법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발전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 초 가온들찬빛에 이어 소화 천사의 집, 동그라미재활원, 교남소망의집이 '시설 운영 예·규칙집'을 발간하였다.

이 규칙집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다 하겠으나, 특히 전체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연구하여 제정하였다는 것과 둘째 내용에 있어 장애인 중심이라는 점과 셋째 직원들에 의해 실행되고 운영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운영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립하고 제정하기 위해 각 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행복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세부적으로 규정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직원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 시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즉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말투나 표정, 그리고 결정에 대한 선택권 등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관리운영이란 명분으로 쉽게 간과한 행동에 대해, 어떤 부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행동으로 인권을 침해할 요인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남소망의집에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시설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직원들의 제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공익단체변호사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세미나를 갖게 됨은, 본원이 앞서 예·규칙집을 발행하고 침해사례에 따른 인권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시설근무자로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며, 당연히 전체적 내용에 대한 이의는 없다.

또한 실천방안에 관한 내용 또한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에 규정되어 있기에 사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토론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패러다임이 자선(charity)에서 복지(welfare)로 이동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법 역시 변화를 요구하는 시설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첫째 자선적 패러다임 하에서의 인권보호입니다.

자선 패러다임에서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개인들의 열정과 동기가 강조되고, '희생'과 '봉사', '동정'과 같은 가치가 지배적이다.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동기의 순수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시혜에 따른 부적절한 태도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시설장애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아 어린아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불 선택적 삶을 살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 패러다임에서는 문제를 보는 시각부터 다른데, 비록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돋는 행위나 받는 태도가 자발적 동기와 희생의 봉사정신과 시혜에 따른 부적절한 태도가 요구되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이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에 의해 유발되고, '사회적 행위'로서 규정되며 서비스의 요구가 '사회적 책임'에 따른 '권리'로서 인식되어 서비스의 제공과 수급의 '결과'가 중요시된다. 이러한 가치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시설장애인의 권리와 그들의 인권보호는 선행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에 요구되어지거나 행해졌던 지난날의 실천방법 역시 자선 패러다임의 가치에 자유로울 수 없었고 변화되어지는 복지 패러다임의 가치에 의해 능동적 혹은 수동적 변화의 시대적 요구는 낮 설은 모습이 아님을 시설 현장이나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화되어진 가치 하에서 시설의 역할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역시 요구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권의 실천적 방법 또한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시설의 정체성이 시설 설립자 혹은 법인의 성격에 의해 정립되어지거나 시설내의 사업에 의해 좌우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그에 따른 정체성의 방향은 시설 운영에 있어 시설의 역할을 가정과 교육 훈련기관, 의료로 나눌 수 있으며,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법과 규정 역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영역에 따라 혹은 역할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 따른 직원들의 행동과 태도가 장애인들에게 인권침해가 되기도 하고, 정당화되기도 한다.

즉 시설이 생활시설이며, 가정과 같은 환경과, 가족으로서 입소생활장애인들을 대한다면 그 속에서 옹호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는 가족의 일원으로 보호자와 같으며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직원)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역할자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행동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가족입장에서의 역할로 인해 장애인에게 대하는 태도 및 언행은 우리사회의 자녀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취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인권문제로 규정하고 적용할시 조심스러운 측면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로서의 역할, 훈련교사로서의 역할, 의료행위자로서의 역할 등에서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태도 및 언행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 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최 측의 개원기념일을 맞아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조작·변질되거나 반대로 사회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역할을 시설이 더욱 잘 할 수 있는 양면의 날 속에서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이란 주제로 실천적 의미의 기념세미나에 참석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임이 전국시설운영자, 관계자들에게 시설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이 되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주최 측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토론 3♥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토론자 : 임효경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팀장)

우선 교남소망의집 개원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듯 개원기념일을 맞이하여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장애인단체 실무자로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당사자주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면서 각종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장애관련기관에서도 이 개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 수정하여 제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토론자는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문에 대해 각각 토론문을 작성하였으며, 각각의 발표문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토론자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발표 토론〉

본 주제발표문에 의하면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시설 신고 기준 강화, 소규모 그룹홈 확대,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시설운영 평가기준 세분화,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발표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본 토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시설의 설치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로 인해 과연 대부분의 시설이 외곽지역으로 설치되었는가? 시설의 설치기준의 강화로 인한 시설장애인의 인권이 과연 보장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토론자는 설치기준의 완화가 시설의 주변 환경을 이루었다는 논리에는 좀 무리가 있는 듯하다. 물론, 설치기준의 완화로 인해 비인가시설이 제도권으로 많이 양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시설의 외곽화와의 상관관계는 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즉, 시설의 구조가 빈약한 형태로 신고시설로 양성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신규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원래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으로 시설운영이 인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바뀌었고, 개인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분야의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관점과 그동안 비인가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이 최소한의 환경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권으로 유입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생활시설의 확대와 시설의 외곽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시각은 동의하나, 시설의 신고기준에 대한 강화에는 대규모시설과 소규모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용이 달라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분야에 대해서 시설생활인 중에서도 자기인식 및 자기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발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시설생활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설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의 문제이다. 바우처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 공급되어 시설간의 경쟁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시설을 선택할 때 장애인에게 선택할 시설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이 지속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재활모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운영위원회에 시설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에서 의사표현 및 자기주장에 한계가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시설의 장애인의 과반수는 정신지체장애인인 입소되어 있지만, 정작 참여와 선택권의 영역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후견인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후견인의 범주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장애인 중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기주장을 위한 훈련의 방법으로 자조그룹 형태의 동아리조직을 육성하여 자기의 의사표현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집단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장애인 당사자가 하며, 가족 및 교사, 후견인 등은 서포터즈로써 이러한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시설을 생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동료모임을 통해 시설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설서비스의 내용과 원하는 욕구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위원회의 참여형태보다도 비공식적인 자조모임을 통한 의견제시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정신지체장애인의 참여의 형태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발표 토론〉

1. 들어가며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생활내부지침과 사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보호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을 검토하면서, 시설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옹호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 본 규정에 대해 정신지체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옹호를 위한 단체의 실무자로써 매우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장애영역 중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은 통상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유형, 운영법인의 성격, 교사의 자질 등의 여러 변수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로써의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의 자구노력에 의해 성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인권에

대한 개념과 교육, 그리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구성하면서 시설장애인의 인권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는 언어로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2. 규정에 대한 토론

가. 규정의 총칙

규정에 관한 목적, 이념, 원칙, 권리분야 등 본 규정의 기본철학이 담긴 총칙의 적용대상이 전체 시설장애인인지? 교남소망의집의 생활인 중심인지?에 대한 명확한 타겟 집단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규정제정은 교남소망의집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남의 특수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한 것보다 전체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된 규정이 많다. 따라서 교남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정신지체인)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인 용어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용어로 정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규정에서 제5조에서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기관과 직원에 역할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관내에서의 권위구조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문서화된 규정으로써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충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규정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행 강구수단 등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기관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라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나. 인권예방의 범주

제7조(장애인의 개인적 권리)에서 시설의 생활중심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제시하였는데, 본 토론자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시설장애인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왜 제외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영역이라서 각각의 개인적인 권리영역에 녹아들어가 있지만, 정신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라면, 가장 열악한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이 좋을 듯싶다. 특히, 사회적 권리분야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장애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라 명함)과 많은 분야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차법이 현실화되어서 적용된다면 사회적 권리는 시설에서 굳이 다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장차법이 적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권리분야에 의료보장에 대한 영역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으면 한다. 시설에서 생활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인 조치와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교육 및 직업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종교생활의 보장영역에서 제24조(직원의 역할) 분야에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었는데, 종교는 본인의 선택권의 영역이지 지원영역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의미, 선호하는 종교 등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제26조 (성생활의 보장영역)에서는 성에 대한 인지 및 바람직한 역할행동 등에 대한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추가함이 좋을 듯 하다.

제32조(식생활의 권리보장 영역)에서는 단체급식에 있어 본인이 선호하는 음식에 대한 추가 욕구가 있을시 제한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스스로 섭식조절이 잘 안되거나 지나친 편식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제한범위를 설정함이 좋을 듯하다.

제36조(프로그램참여보장 영역)에서는 사례발표자가 제시한 바 같이 '장애인통합

'서비스지원규정'이라고 별도의 성문화된 규정이 있는데 굳이 권리영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규정의 중복 및 서로 상충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서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라.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이는 앞에서 논의했듯이 의료보장의 영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62조(선거 및 참정보장의 권리영역)에서는 정신지체인이 투표권의 행사보장에 있어 선거보조인의 동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게 좋을 듯싶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어야 하겠지만,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투표소에서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 인권침해 사전예방 체계

제76조(연구모임 운영)의 주체는 기관의 종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기관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갖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조모임을 육성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즉, 정신지체장애인 당사자로 이루어진 인권모임을 마련하여, 본인이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솔직한 대화와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스스로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임의 주최는 장애인 당사자이고, 교사나 자원봉사자는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단,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의 역할만 해주면 될 것이다.

3. 끝마치며

부족하지만 각각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자 토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정한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시설의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노력이 전 시설로 확대·정착되어야 하며, 둘째, 인권의 주체인 시설장애인에게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 및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셋째,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넷째,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제제조치에 대해 언급되어야 하며, 직원의 역할에 대한 점검도 1회 이상에서 4회 이상(분기별 점검)으로 그 횟수도 증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본 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각종 장애계 전문인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보완·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토론자의 토론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내·외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 록

1.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2.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운영세칙
3. 교남장애인재산권보장규정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제정 2004. 8.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게 있어 생활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정상생활에 필요한 일의 모두 혹은 일부를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2.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3. “특정권리”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4.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시설로써 장애인이 장·단기간 주거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 본 규정에 의한 교남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천원칙)

본 규정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듯이 모든 이와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특히 다음 각 호의 실천원칙을 이해하고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수한 권리의 인정
2. 이 특수한 권리와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한 존중
3. 장애를 가진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동등한 모든 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4. 동 규정은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것일 뿐 완전한 이상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호의 내용에 어긋나는 침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제5조(인권보장위원회)

- ①교남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장 직속으로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 2 장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6조(인권침해예방의 범주)

- 본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2.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제7조(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①본 규정에서의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라 함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국제연합(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2. 개인물품 관리 보장
3.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4. 종교생활의 보장
5. 성생활의 보장
6. 식생활의 보장
7. 프로그램의 참여 등
8.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9. 기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제8조(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①본 규정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라 함은 당사자의 사회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2. 교육 및 학습 보장
3.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4. 선거 및 참정 보장
5.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6.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7. 기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제 3 장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제 1 절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제9조(목적)

장애인의 자기관리 및 개인위생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개인별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케 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권익 보호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의복의 선택)

1. 장애인은 각자의 연령과 취향, 욕구에 따라 자신의 치수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상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구입하도록 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선택·구입을 하되, 담당직원의 임의대로 구입할 수 없다.

②(의복의 착·탈)

1. 장애인의 의복의 착·탈 시에는 그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의복을 빌려 입는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착의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토록 한다.
3. 중증 장애인의 의복 착·탈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성의 직원이 보조를 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의복 보관 및 정리정돈)

1. 장애인의 개인적 의복은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별 옷장에 보관되도록 한다.
2. 장애인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담당직원이 장애인의 의복 정리 지원 및 의복 폐기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획일적 의복 착용의 제한)

1. 시설 내·외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 한다. 다만 캠프 및 체육대회 등 단합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 일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특성상 동일한 종류·색상의 의복이 후원되었다 하여도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되어서는 안되며, 시설장애인의 정원 중 1/10 이상이 동일 의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이·미용)

1. 장애인은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이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설 내에서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머리스타일을 되지 않아야 한다.
3. 장애인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헤어 젤, 빗, 밴드 등의 머리손질도구를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다.

⑥(화장)

1. 장애인은 각자의 성별·연령과 취향, 피부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선택한 화장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⑦(화장실 이용)

1. 장애인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 아서도 안된다.
2. 화장실은 사적공간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⑧(목욕)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인의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목욕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일상 활동 등을 고려 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개별화하고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증장애인으로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11조(기관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피복비는 반드시 장애인의 피복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 및 물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개별 의류 보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세식 변기로써 여자용은 10인당 변기 2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장애인 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목욕탕 및 화장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시건장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2조(직원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 인에게 그에 따른 설명과 동의를 최대한 얻어야만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2 절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

제13조(목적)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소유권 박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개별적인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 하여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개인물품의 범위) 개인물품의 범위는 화장품, 세면도구, 앨범, 의류 등의 개인생활용품 외에 본인이 선물로 받은 물품, 장신구, 책 등 장애인이 개인적인 물 품이라고 여기는 모든 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피복	의류, 속옷, 신발 등
장신구	머리핀, 지갑, 허리띠, 액세서리, 개인거울 등
화장품류	파우더, 기초화장품, 립스틱 등
가전제품류	카세트, 이어폰, 핸드폰, 컴퓨터, CD플레이어 등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품류	상장, 앨범, 사진 등
교재류	잡지책, 학습지, 각종 책 등
세면도구류	칫솔, 치약, 수건 등
취미관련 물품류	개인적 취미활동 물품 예) 십자수관련용품 등
침구류	베개, 이불 등
선물받은 물품	액자, 음악 테이프 등
기타	개인적인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각종 물품

②(개인물품의 구입)

1. 장애인은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취향 및 욕구에 따라 스스로 구입하도록 한다.
2. 기관에서 제공되는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의 구입은 장애인의 개인적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비용으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소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개인물품으로 간주토록 한다.
3. 전 호에 의해 장애인이 개인물품의 구입을 위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장애인의 동의를 얻은 후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 있다.

③(개인물품의 보관)

1. 장애인은 개인의 물품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2. 개인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은 시건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에 따른 열쇠의 보관도 장애인이 하도록 한다.
3. 중증장애인으로 개인물품의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한 해당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기관의 역할)

- ①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개인물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건장치를 최대한 개별적으로 확보·비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에 대한 기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6조(직원의 역할)

- ①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관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동의 및 의사에 반하여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3 절 주거생활 (주거환경 및 공간배치) 보장

제17조(목적)

장애인의 주거생활 보장이라 함은 과거 생활시설의 특성상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마련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주거환경의 조성)

1. 장애인은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구조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2.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성별에 맞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실내 환경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커튼, 침대 커버, 조명 등 실내 장식의 주기적 변화를 피할 수 있다.

4. 장애인은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장애인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주거환경은 최대한의 미적조화를 달성해야 한다.

②(숙소 배치)

1. 장애인은 본인의 숙소 배치를 위한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의사소통이 힘들고 중증인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평상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타 장애인과의 상호관계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이 거주하는 숙소의 인원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숙소 내에 본인의 사적물품을 비치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4. 장애인은 본인의 생활공간이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시숙소 배치)

1. 장애인이 본원에 신규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임시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2. 임시숙소의 배치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의 기본적인 습관 및 태도, 능력 등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함이므로 관찰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숙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시설 내·외적으로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애인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을 변화·발전시켜야 한다.

3. 기관은 장애인의 생활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추구하여야 한다.

4. 주거환경과 관련되어 외부의 후원물품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장애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0조(직원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당직원이 임의로 장애인의 숙소를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의 생활공간 내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공간배치 및 환경미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주거공간을 불특정인에게 개방하여서는 안되며,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4 절 종교생활의 보장

제21조(목적)

장애인의 종교생활 보장이라 함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리가 생활시설의 장애인에게도 보장됨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다.

제2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장애인의 종교 선택)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종교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택된 종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장애인의 종교 활동)

1. 장애인은 본인이 선택한 종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23조(기관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신규입소 및 이용자에게 본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관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종교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기관의 종교이념에 맞지 않는 타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4조(직원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5 절 성생활 보장

제25조(목적)

장애인의 성생활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같이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6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장애인은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③장애인은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기관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직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성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교육용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8조(직원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에 대한 상담과 교육시 담당직원은 너그러운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장애인의 성적 행동에 대하여 담당직원은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한다.

3. 장애인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하며 성교육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9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성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성적 욕구나 표현이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2. 낙태 또는 불임시술과 같이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30조(제한범위의 절차)

①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담당직원이 성생활의 제한에 대한 사유 및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2. 위원회에서는 부모, 관련자원,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의 의견 취합 및 사실조사
3.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동의
4.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지도방침 및 대응책 제시·시행

②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연고자 등 당사자에 의한 요청
2. 위원회에서 관련자원,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3. 장애인 및 연고자의 최종 결정

제 6 절 식생활 보장

제31조(목적)

장애인의 식생활 보장이라 함은 시설에서 제공되어지는 식단 및 간식에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단체급식에 있어서의 보장)

1. 장애인은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의 보장을 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영양사는 단체급식의 식단 작

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3.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매 끼니마다 정기적으로 4찬 이상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선호음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인이 선호 음식에 대해 추가 욕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5. 단체식의 배식 또는 섭식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②(가정식의 보장)

1. 장애인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거공간에서 자유로운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동 항을 보장하는 방법은 위 제1항의 방법과 같다.

③(보조기구 및 환경의 지원)

1. 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의 식사환경은 최대한 쾌적하며, 식사를 하기 쉬운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간식의 선택·결정)

1. 장애인은 주식 이외의 간식에 있어 본인의 기호식품 및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은 기관의 간식비 또는 개인용돈을 사용하여 스스로 구입·섭취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간식의 종류와 시간을 가능한 한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기관의 집단적인 간식 지급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제33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식사 및 간식지급에 있어서 최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기관은 최대한 일반화된 식기나 가정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부에서 보조되는 주·부식비 및 간식비는 반드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의 상향 배정을 위해 외부 후원금이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4조(직원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담당직원은 평상시 장애인의 식습관을 관찰하여 개인별 선호 음식을 올바르게 조사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음식 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건강상의 위험으로 인해 간호사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7 절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

제35조(목적)

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과 시설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장애인이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결정권과 재활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6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1. 장애인은 본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의료재활 등)에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은 본원에 입소한 이후 통합재활계획 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수립회의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재활계획 수립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1. 장애인은 기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은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각종 편의용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1.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에 있어 본인의 욕구 및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3.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다.

제37조(기관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장애인의 개별적 통합재활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애인의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가급적 장애인이 통합적 지역사회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8조(직원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 자원봉사자와의 활동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사전 교육하고 보호차원의 활동 보다는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외부활동 참여에 따라 장애인의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한의 관찰을 통하여 욕구를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9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언어치료, 심리치료, 수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수립된 경우
2. 장애인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어려운 경우

제40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합적 재활계획수립회의 및 사례회의 실시
2. 회의록에 따른 결정사항의 장애인 동의
3. 기관장 결재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 수립

제 8 절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제41조(목적)

장애인은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더구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장애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3.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장애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애인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2.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장애인을 방치·유기하는 경우
3.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4. 기타 장애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제43조(기관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2.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장애인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4조(직원의 역할)

①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